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여성가족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권익증진국 밑에 설치한 권익침해방지과의 평가기간을 2023년 9월 30일에서 2024년 9월 30일까지로 1년 연장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정원 2명(9급 2명)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감축하며, 정원 2명(9급 2명)을 증원하되 각각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3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의 : 행정안전부 등과 협의되었음

라. 기타 : 입법예고(2023. 9. 00. ~ 9.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여성가족부령 제 호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 평가기간란 중 “2023년 9월 30일”을 “2024년 9월 30일”로 한다.

여성가족부령 제132호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3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2의 정원 2명(행정서기보 2명)은 2026년 8월 10일까지 존속한다.

[별표 3]

여성가족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11조 관련)

조직	정원	평가기간
권익증진국 권익침해방지과	5명 (4급 1명, 5급 2명, 6급 1명, 7급 1명)	2024년 9월 30일까지